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한일장신대학교

1. 2025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가. 주요사항

가. 수묘사항											
주	요변	l경 사항			학년도				학년도		
CTO		구 분	구분	인 원	비율(%)	비고	구분	인 원	비율(%)	비고	
모집인 (정원		<u>수 시</u> 정 시	수시 정시	213 6	97.26 2.74		수시 정시	213 6	97.26 2.74		
(82	LII)	- 3 N	ЭN	219	100%		- aл Л	219	100%	-	
원서접	수기간		수시: 2023.	9.11(월) ~		.6(토)	수시: 202	4.9.9(월) ~ 9	.13(금)	1.3(금)	
대학별 (정원니					· 6개로 전형!		정시(나군): 2024.12.31(화) ~ 2025.1.3(금) · 수시 4개, 정시 2개 총 6개로 전형방법 제한				
		모집인원	총 정원내 (정원외: 생활수급군	농어촌4명, 변및차상위 8	외 33 = 252명 특수교육대상: 명, 재외국민:	자 17명, 기초 외국인 4명)	· 정원내 219명. 정원외 29명. 총 정원내 219 + 정원외 29 = 248명 (정원외: 농어촌4명, 특수교육대상자 17명, 생활수급권및자상위 8명) ☀ 재외국민과외국인 4명 삭제(외국인은 별도5				
일부 전 법	전형 만	경칭 및 선발방	모집단위 · 전형 2일간 학과 각 · 수시 전형	점수만 불이 간 진행(간호 1일씩 진행 일: 2023.10 2023.10	익 학과 제외 도	학과	모집단우 · 전형 2일 학과 각	자 불합격처리 점수만 불이일 간 진행(간호혁 : 1일씩 진행 : 형일: 2024.10.2	(학과 제외 모집 수시모집)	입단위, 간호 과제외	
학생부			교과 100 전형 교과90 수 활용지표 · 간호학과: -정시변경	%(수시 운동 %, 출결10%)), 학생부 기 내부기준 계 : 기본점수 !	처방재활학과 반영, 석차등 ŀ중치 및 가신 산식 적용 500점, 실질빈	전학년 100%), 운동부특기자 급(내신반영점 참점 없음 양점수 100점 격만 체크. 성	자 활동시보기, 학생은 가당시 및 가산성 없음				
수시모	집 전형	형 간 중복지원	· 중복지원	불가능			 중복지원 	! 불가능			
모집단			· 기존 모집	단위(6개 학	<u>과)</u>		· <u>기존</u> 모	집단위(6개 학교	<u>바)</u>		
전형 신	J설 및	闻지	자전형 신설 학부터 졸업 ·정시 수능 ·정시모집:	(호남권: 전 까지) 위주 전형 폐 실용음악학	북,전남,광주 지(정시 간호	모집단위 학생]: 실용음악학교 '제, 학생부 40		진행	
수능	선택 가산 영어	반영방법	(실용제외): (20%) 탐금 · 수능 미 등 적 반영(간료 · 자격기준0 **참고사향: 성적통지일(· 없음 · 등급을 백 · 국어, 수료	국어(20%), 마영역 과목: 응시자 '내성 한학과 포함) 네 한국사 반 2024학년도 2023.12.8(등	수학(30%),영 중 최고성적 ' 신반영 점수 : 영(성적은 미년 : 수능일(202 음))	활용지표' 성 반영) 3.11.16(목)),	· 학생부! · 정시 - 실용은	시기 수능성적 간 반영(검정고 악학과 제외 (I 포함)	시포함)	생부 100%(검	
	수시	성적 활용지표 모집 수능최	환산) · 없음	.,	, ovi(096 76/1					
	저학	력기준									
	וכ	타	동점자는 현 ※ 간호학교 2순위-학생 · 전형료 금액	:격처리함(간호): 1순위-수능 부 영어, 3순 약	성적(영어, 수 리-학생부 국어 일(기본 2만원,	학, 국어 순),	동점자는 ※ 간호 章 국어 성 · 전형료 금	리기준: 모집인원 합격처리함(간호 함과: 학생부 1순 적순 합격처리 액 : 전년과 동일 류포함), 실기고서	학과 제외) 위 영어, 2순위 일(기본 2만원, 9	l 수학, 3순위	

- 2 -

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표

						정 원 내				정 원 외		
	저형	ᄆᄭ	ㅁ짔	일 반 전 형		특 별 전 형			9	특별 전형	_	
학 과	전 형	인훤	모집 인원	모집시기	일 반 학생	운동부 특기자	지역 인재	지역인 재수급 자	소 계	농어촌 학 생	특수교 육 대상자	기초생 활수급 권자및 차상위 계층
신학과		23	수 시	22	-	-		22	-	6		
U = M		20	정시(나)	1	ı	-		1	ı	-		
사회복지학과		37	수 시	36	ı	-		36	1	7		
시정극시작과	학생부	37	정시(나)	1	-	-		1	-	-		
심리상담학과	교과	22	수 시	21	-	-		21	-	2	-	
유디영금목과		22	정시(나)	1	-	-		1	-	-		
운동처방			수 시	9	40	-		49	-	-		
재활학과		50	정시(나)	1	-	-		1	-	-		
N 0 0 01=171	실 기	0.5	수 시	24	-	-		24	-	2		
실용음악학과	위 주	25	정시(나)	1	ı	-		1	-	-		
간호학과	학생부	₹ 62	수 시	42	ı	17	2	61	3	-	8	
선호학파	교과	02	정시(나)	1	ı	-		1	-	-	ı	
			수 시	151	40	20	2	213	4	17	8	
합 계		219	정시(나)	6	-	-		6	-	-	-	
			Й	157	40	20	2	219	4	17	8	

다. 모집일정

구	분		수시	정시 나군	비고
원서 접수	1 우 년		2024. 9. 9(월) ~ 9. 13(금)	2024. 12. 31(화) ~ 2025. 1. 3(금)	유웨이어플라이 우리대학 접수처(창구,우편 접수)
면접(실	실기).	고사	2024. 10. 11(금) / 10. 25(금)	2025. 1. 15(수)	10.11(금): 간호학 제외 전 모집단위 10.25(금): 간호학과
합격자 발표	최	초	2024. 11. 7(목) 14:00	2025. 1. 24(금) 14:00	홈페이지, SMS
	충원	합격	2024. 12. 26(목) 18시 까지	2025. 2. 19(수) 18시 까지	개별통보
	예	최초	2024. 12. 16(월) ~ 18(수)		
등록	치금	충원 등록	2024. 12. 27(금) 22시까지	-	우리대학 지정금융기관, 무통장입금
	최	종	2025. 2. 10(월) ~ 2. 12(수)	(충원등록개별통보)
	충원	분등록	2025. 2. 20)(목) 22시까지	

[※] 간호학과 수능최저기준 폐지로 합격자 발표 통합하여 진행

2. 세부 기본계획

가. 대학별 모집시기 및 전형별 모집인원

대학명	모집 시기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 인원	모집단위별(전공포함) 모집인원
한일장신대	수시	학생부위주 (교과)	일반학생	130	신학과:22,사회복지학과:36,심리상담학과:21,간호학과:42, 운동처방재활학과:9
한일장신대	수시	학생부위주 (교과)	운동부 특기자	40	운동처방재활학과:40
한일장신대	수시	학생부위주 (교과)	지역인재	17	간호학과: 17
한일장신대	수시	학생부위주 (교과)	지역인재수급자	2	간호학과:2
한일장신대	수시	학생부위주 (교과)	농어촌학생	4	사회복지학과:1,간호학과:3
한일장신대	수시	학생부위주 (교과)	특수교육대상자	15	신학과:6,사회복지학과:7,심리상담학과:2
한일장신대	수시	학생부위주 (교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	간호학과:8
한일장신대	수시	실기위주	일반학생	24	실용음악학과:24
한일장신대	수시	실기위주	특수교육대상자	2	실용음악학과:2
한일장신대	정시 (나군)	학생부위주 (교과)	일반학생	5	신학과:1,사회복지학과:1,심리상담학과:1, 운동처방재활학과:1,간호학과1
한일장신대	정시 (나군)	실기위주	일반학생	1	실용음악학과:1
한일장신대	수시	기타	전 교육과정이수자 (3월)	0	간호제외 모든 모집단위 0
한일장신대	모집 시기	기타	전 교육과정이수자 (9월)		간호제외 모든 모집단위 0
한일장신대	모집 시기	기타	부모가 모두외국인 인 외국인(3월)	0	간호제외 모든 모집단위 0
한일장신대	모집 시기	기타	부모가 모두외국인 인 외국인(9월)		간호제외 모든 모집단위 0
합계				248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모집항.
 * 간호학과 지역인재전형 및 지역인재수급자전형 추가(대교협 입학기획팀-393-2022.03.16.호 근거)
 - 지역인재전형인원(간호학과 정원대비 입학생기준 30%선), 지역인재수급자전형(간호학과정원 50~100명은, 2명)

나. 전형요소

- (1) 정원 내
- 일반전형

					선발	7	전형요소 변	반영비율(%	,)
대학	모집시기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단위	비율 (%)	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한일 장신대	수시	학생부위 주(교과)	일반학생	신학과,사회복지학과, 심리상담학과, 운동처방재활학과, 간 호학과	100	80		20	
한일 장신대	수시	실기위주	일반학생	실용음악학과	100	40		10	50
한일 장신대	정시 (나군)	학생부위 주(교과)	일반학생	신학과,사회복지학과, 심리상담학과, 운동처방재활학과 간호학과	100	100			
한일 장신대	정시 (나군)	실기위주	일반학생	실용음악학과	100	40			60

○ 특별전형

	모집				선발	7	전형요:	소 반영비	율(%)	
대학	시기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단위	비율 (%)	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기타 내용
한 일 장신대	수시	학생부위 주(교과)	운동부특기자	운동처방재활학과	100	60		40		
한 일 장신대	수시	학생부위 주(교과)	지역인재	간호학과	100	80		20		
한 일 장신대	수시	학생부위 주(교과)	지역인재 수급자	간호학과	100	80		20		

- (2). 정원 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	O 71 11 31	지원이원	חדורוטו	선발	전형요소 반영비율(%)				
내역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비율 (%)	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기타
한일장신대	수시	학생부위주 (교과)	간호학과	100	80		20		

○ 농어촌 학생

디다하		지하이하	חארוט	선발 기기의 기기의		전형요소	: 반영비	율(%)	
대학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비율 (%)	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기타
한일장신대	수시	학생부위 주(교과)	사회복지학과	100	80		20		
한일장신대	수시	학생부위 주(교과)	간호학과	100	80		20		

○ 장애인 등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

CII ≑L		고원으원	חזורוטו	선발	전형요소 반영비율(%)				
대학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비율 (%)	학생부	수	면접	실기	기타
한일장신대	수시	학생부위 주(교과)	신학과,사회복지학 과,심리상담학과	100	80		20		
한일장신대	수시	실기위주	실용음악학과	100	40		10	50	

다. 최저학력기준

- (1) 정원 내 및 정원 외
- 모든 모집단위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음

라. 학생부(일반전형 기준)

(1)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대학	모집시기	전형명	모집단위	반영교과	점수산출 활용지표	
한일장신대	수시	시 일반학생 전모집단위		전교과	석차등급	
1 2 3 2 U	정시(나군)	일반학생	전모집단위	전교과	석차등급	

(2)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

대학	모집 전형명 모집단위		적용대상	학년팀	별 반영비	율(%)	_	반영비율 00%)	
	시기	200	2027	졸업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비교과
	수시	일반학생	전모집단위	전학년도	100		100		
한 일 장신대	수시	운동부특기자	운동처방재활학과	전학년도		100		90	10
	정시(나군)	일반학생	전모집단위	전학년도		100		100	

마. 수능 반영방법

(1) 전모집시기에서 수능 반영하지 않음

바. 면접 논술시험

(1) 면접구술고사

대학명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면접기준	면접방법		
		실기위주	실용음악학과	인성 및 가치관, 전공관심도, 소명감, 적성 및 지원동기 등	면접위원 3인의 평균점을 반영함		
한 일 장신대	수 시	학생부위주 (교과)	신학과,사회복지 학과,심리상담학 과,간호학과,운 동처방재활학과	인성 및 가치관, 전공관심도, 소명감, 적성 및 지원동기 등	면접위원 3인의 평균점을 반영함		
	정시(나군)	실기위주	실용음악학과	인성 및 가치관, 전공관심도, 소명감, 적성 및 지원동기 등	면접위원 3인의 평균점을 반영함		

사. 지원자격(정원내외)

(1) 운동부특기자 (정원 내)

공통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대한체육회 산하 각 경기단체 연맹에 선수 등록된 자

대학명	모집시기	지원자격 유형	지 원 자 격
한일장신대	수시	- 야구 / 축구 / 하키 / 양궁	- 대한체육회 산하 각 경기단체 연맹에 선수
인물정신대	ナハ	사격 / 테니스	등록된 자

(2) 지역인재 (정원 내)

공통지원자격

- 지역인 재전형: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호남권)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대학명	모집시기	지원자격 유형	지 원 자 격
한일장신대	수시	호남권 고교졸업자	- 호남권(전북,전남,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입학에서 졸업까지)

※ 고등학교 졸업이후 발급된 졸업증명서 제출해야함(추가모집기간 까지)

(3) 지역인재수급자 (정원 내)

공통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지역인재전형: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호남권)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자녀
-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대학명	모집시기	지원자격 유형	지 원 자 격
	수시	호남권 고교졸업자 수급자	- 호남권(전북,전남,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자(입학에
한일장신대			서 졸업까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이후 발급된 졸업증명서 제출해야함(추가모집기간 까지)

(4) 농어촌 학생(정원 외)

공통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항목중에 해당되는자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따른 도서·벽지 지역을 원칙으로 함

대학명	모집시기	지원자격 유형	지 원 자 격
대학명 한일장신대	모집시기 수시 정시(나군)	자원자격 유형 가. 유형1(6년)_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 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학생과 부모가 모두 거주 나. 유형2(12년)_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4호에 따라 고등교육법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독·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입 시까지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거주자로 서 농어촌지역(광산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 자나.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거주한 자(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연지역 및도서, 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2)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산자 제외
			※ 수시 합격 후 최종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농 어촌전형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이 변경 (농어촌 지역 학교를 최종 졸업하지 않은 경우 등)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자격 변경시 반드시 입학학생지원처로 통보하여야 함)

(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정원 외)

공통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대학명 모집시기		지원자격 유형	지 원 자 격
한일장신대	수시 정시(나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 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6) 장애인등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정원 외)

공통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대학명	모집시기	지 원 자 격
한일장신대	수시 정시(나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등록을 필한 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

(7) 재외국민과 외국인(정원외) : 북한이탈주민 제외

공통지원자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중 6호 7호에 해당하는 사람

-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 가. 재외국민
- 나. 외국인
- 다. 「국적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대학명	모집시기	지 원 자 격유형		지 원 자 격
한일장신대	수시 정시(나군)	재외 국민과 외국인	부모가 모두외국인인 외국인(3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 6호에 따른 대상자로,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부모가모두외국인인 외국인(9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 6호에 따른 대상자로, 우리나 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전 교육과정 이수자(3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7호에 따른 대상자로 외국 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전 교육과정 이수자(9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7호에 따른 대상자로 외국 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